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46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차규근 · 정춘생 · 김준형
강경숙 · 서왕진 · 신장식
백선희 · 김형연 · 황운하
박은정 · 김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안 제33조의12제1항), 해당 기여금을 「군인

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안 제33조의12제3항) 군인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 동안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1748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2(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등) ① 국방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에게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7호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기여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기여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예술·체육요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소득월액	병역특례 기여금 적용 비율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0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
1억원 초과	1,4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여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기여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병역특례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기여금 및 제5항·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5(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미납) 예술·체육요원이 제33조의 12제7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정된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의12(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등) ① 국방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에게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7호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기여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기여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예술·체육요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기준소득월액	병역특례 기여금 적용 비율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0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
1억원 초과	1,4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여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신 설>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기여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병역특례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기여금 및 제5항·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9조의5(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미납) 예술·체육요원이 제33조의12제7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정된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기여금을 납

	<u>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u> <u>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u> <u>하의 벌금에 처한다.</u>
--	--